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도로관리과-7556
등록일자	2016.4.6.
결재일자	2016.4.7.
공개구분	부분공개(7)

주무관	도로굴착팀장	도로관리과장	안전교통국장		
황준열	황윤기	최창운	전결 04/07 박은섭		
협조자					

『원활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』

## 2016년도 추가 공종 징수단가 산정

### 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
-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-3467(2016.3.2) :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통보

### □ 연왕 및 검토의견

- 서울시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 중 도로시설물(측구,경계석) 및 보도포장(탄성포장) 등 일부 징수 단가가 없어 원인자 손괴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추가 공종에 대하여 강남구 2016년 건설공사 설계기준 일위대가표를 근거로 산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□ 추가공종 단가 산정 연왕

구분	공종	규격	단가(원)	비고
도로 시설물	측구	B=45cm	136,930	- 경계석 및 측구 : ㎡당 단가
		B=50cm	149,610	
	보차도경계석	20×25×100cm	171,840	
	도로경계석	15×15×100cm	117,330	
		10×10×100cm	96,040	
보도	탄성포장	탄 성 포 장 : 1.3cm 기초콘크리트 : 10cm 보 조 기 층 : 10cm	직접 : 77,800 간접 : 43,050	• ㎡당 단가
차도	미끄럼포장재	일반도로용, 유리알	139,620	• ㎡당 단가

□ 적 용 :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

2016. 04 . .

강 남 구  
(도 로 관 리 과)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•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-3467(2016.3.2) 2016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단가 통보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해당 없음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 • 대상 : 도로굴착공사 사업 시행자
<b>분야별 검토사항</b> [계속 : ] [신규 : 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<b>타 기관 사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서울시 징수단가 일괄적용 및 추가 공중 자체 산정 추진
<b>전문가 자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 해당없음

- 원활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-

## 2016년도 추가 공종 징수단가 산정

서울시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중 경계석 및 측구 설치 등 도로시설물과 보도 포장재(탄성포장) 징수 단가가 없어 복구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우리구 2016년 건설공사 설계기준 일위대가표를 근거로 추가 공종에 대한 징수단가를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I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
-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-3467(2016.3.2) :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통보

### II 현 황

-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서울시에서 통보한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고 있으나,
-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 중 도로시설물(측구, 경계석)과 보도포장(탄성포장) 공종 등 일부 징수 단가가 없어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,
- 원활한 도로굴착복구 허가처리를 위하여 추가 공종에 대한 징수 단가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, 우리구 2016년 건설공사 설계기준 일위대가표를 근거로 도로 복구비 추가 공종 징수단가를 산정코자 함.
  - ▶ 추가 공종 : 도로시설물(측구, 경계석) 및 탄성 포장 등

□ 추가공종 단가 산정 현황

구분	공종	규격	단가(원)	비고
도로 시설물	측구	B=45cm	136,930	- 경계석 및 측구 : m당 단가
		B=50cm	149,610	
	보차도경계석	20 × 25 × 100cm	171,840	
	도로경계석	15 × 15 × 100cm	117,330	
		10 × 10 × 100cm	96,040	
보도	탄성포장	탄 성 포 장 : 1.3cm 기초콘크리트 : 10cm 보 조 기 층 : 10cm	직접 : 77,800 간접 : 43,050	• m <sup>2</sup> 당 단가
차도	미끄럼포장재	일반도로용, 유리알	139,620	• m <sup>2</sup> 당 단가

Ⅲ 검토의견

□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징수 단가표에 없는 일부 공종에 대하여 우리구 2016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거 추가 적정 단가를 산정 적용함으로써 우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Ⅳ 행정사항

□ 추가 공종 산정단가를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적용

- 붙임 : 1.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알림 및 징수단가표 각 1부  
2. 2016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추가 공정 산출단가 1부. 끝.